

[국책과제분쟁]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여부 판단 - 성실수행 인정 사례: 정부출연금 전

액 환수 + 3년 참여제한 처분 취소: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두47969 판결



'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'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'연구개발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'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, **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,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,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**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

"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는 '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(제1호)'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,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. 그 위임에 따라 구 중

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[별표 2]는,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'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(제1호 가목)'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, '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(제1호 다목)'에는 출연금 환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(이하 '이 사건 시행령 조항'이라 한다)하고 있다.

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,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**'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'와 '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'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,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.**

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'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'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,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,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

한다.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."

행정소송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기술료, 대응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